

## 법제사적·문학적 관점에서 본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

김영혜(연세대)

---

### 1. 들어가는 말

오경의 규정들은 언제부터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았을까? 중기 청동기 시대(약 기원전 2000년-1550년) 하술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출토물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미 하술은 고대 바빌로니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사법적 전통에 있어서도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sup>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오경의 법규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관습으로 먼저 형성되었고, 성문 규정으로 기록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임을 보여준다.<sup>2</sup> 이러한 양상은 고대 근동 법전 전

- 
- 1 Yoram Cohen, "Cuneiform Writing in Bronze Age Canaan", A. Yasur-Landau, E. H. Cline and Y. M. Rowan (eds.), *The Social Archaeology of the Levant: From Prehistory to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46, 252-253.
  - 2 오경의 법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계약법전의 연대는 전통적으로 기원전 10-9세기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Robert B. Coote, *In Defense of Revolution: The Elohist's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21-125.

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일컬어지는 수메르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각 시대의 관습을 흡수하면서 이전 규정을 수정·보완·변용하며 발전해 왔다. 메소포타미아 법전의 영향을 받은 오경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sup>3</sup>

법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 전승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학문을 법제사(Legal History)라고 일컫는다. 법제사는 법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어떤 필요에 의해 수정되며, 후대에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이러한 법제사적 방법론은 오경의 법규들을 단순히 종교적 산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고대 근동이라는 광대한 법적 전통의 지평 위에서 이 법규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신학적 가치를 구현해 나갔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해 준다.

함무라비 법전과 오경의 동태복수법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와 같은 규정은 오경의 동태복수법이 고대 근동의 법적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sup>4</sup> 그럼에도 오경은 이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신학적·윤리적 맥락 위에서

3 B. Wells & F. R. Magdalene (eds.),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vol. 1, *The Shared Tradition Cuneiform and Biblical Sourc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11-14; 임상국, “구약성서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신학과세계』 74 (2012), 7-8; 김아리, “고대 근동 법률 전통의 내부적 영향과 외부적 영향”, 『역사학보』 264 (2024), 231, 239.

4 오경의 규정들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J. R. Sampey, “The Code of Hammurabi and the Laws of Moses II”, *Review & Expositor* 1 (1904), 233-243; M. Zer-Kavod, “The Code of Hammurabi and the Laws of the Torah”, *Jewish Bible Quarterly* 26 (1998), 107-110. 라이트(D. Wright)와 같은 학자는 오경 중 특히 계약법전은 단순히 고대 근동 법전, 특히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의 텍스트를 직접 앞에 두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이라는 급진적 견해를 피력한다. D. P. Wright, *Inventing God's Law: How the Covenant Code of the Bible Used and Revised the Laws of Hammurab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이를 재해석한다. 법제사적 분석은 바로 이러한 표면적 유사성 이면에 있는 신학적·윤리적 고유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경에서 동태복수법은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레위기 24장의 세 본문에 등장하는데, 각 본문은 고대 근동의 법적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본문 중에서도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은 법제사적 방법론으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 그 고유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웰치(J. Welch)와 윌리스(T. Willis)에 의한 문학적·구조적 연구다.<sup>5</sup> 다만 두 연구는 구조 분석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해당 구조가 고대 근동 법전 전통과 어떤 법제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둘째, 브룸(J. Vroom)과 밀그롬(J. Milgrom)에 의한 법적·신학적 연구다.<sup>6</sup>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고대 근동 법전 전통과의 통시적 비교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레위기 24장의 법제사적 위치가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푸아드(C. Fuad)의 서사·문학 장치 연구다.<sup>7</sup> 푸아드는 레위기

---

5 Timothy M. Willis, "Blasphemy, Talion, and Chiasmus: The Marriage of Form and Content in Lev 24,13-23", *Biblica* 90 (2009), 68-74; John W. Welch, "Chiasmus in Biblical Law: An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Legal Texts in the Hebrew Bible", B. S. Jackson (ed.), *Jewish Law Association Studies IV: The Boston Conference Volum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5-22.

6 Jonathan Vroom, "Recasting Mišpāṭim: Legal Innovation in Leviticus 24:10-2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27-44;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2119-2129.

7 Chelcent Fuad, "The Curious Case of the Blasphemer: Ambiguity as Literary Device in Leviticus 24:10-23",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41 (2019), 51-70.

24장의 서사에 등장하는 신성모독자의 정체성이 지닌 모호성을 문학적 장치로 분석하였으나, 이를 법제사적 맥락과 연결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문학적 분석과 법제사적 분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쳐왔으며, 두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레위기 24장 동태복수법의 고유성을 입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이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이유는 구조적 짜임새와 사법적 원리에서 나타나는 차별성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레위기 24장 동태복수법의 특수성을 법제사적·문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대 근동 법전들의 동태복수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오경 내의 관련 본문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레위기 24장만이 지닌 독특한 면모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윌리스의 단층 교차대구 분석을 이중 교차대구 구조로 확장하고, 성결법전의 '본토인/거류민' 틀이 지닌 땅 중심적 신학을 법제사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개별적으로만 수행해 온 문학적 분석과 법제사적 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 2. 고대 근동의 동태복수법

고대 근동 법전 중 신체 상해와 배상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우르남무, 리피트 이슈타르, 에슈눈나, 함무라비, 히타이트, 중기 아시리아 법전이 있다.<sup>8</sup> 이 여섯 법전을 시대순으로 검토하면, 약 천 년에 걸친 배상

---

8 채홍식은 고대 근동의 배상 규정을 논의하며 이 여섯 가지 법전을 인용·분석하였고, 오

및 처벌 방식의 변화 양상은 물론, 동태복수법이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sup>9</sup>

## 1) 수메르 법전

### (1) 우르남무 법전(LU, 기원전 21세기)<sup>10</sup>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인 LU는 신체 상해에 대해 금전 배상 원칙을 고수한다. 구체적으로 치아 파손은 2세겔, 다리를 절단시킬 경우 10세겔, 코 절단은 40세겔, 사지 골절은 60세겔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에서 동태복수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피해자의 신분이 아닌 ‘피해 부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신체 손상에 대해 고정된 벌금형을 부과하는 체계는, 고대법이 동태복수법에서 금전 배상으로 발전해 왔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근거가 된다. 즉, LU는 금전적 가치 산정을 통한 객관적 배상이 오히려 더 선행된 원칙이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sup>11</sup>

---

경의 관련 규정 또한 고대 근동의 배상 원칙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체 상해와 관련된 각 법전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홍식의 논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법전들이 지닌 특성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채홍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탈출 21, 22-27): ‘동태복수법’인가?», 『신학과 철학』 14 (2009), 113-138.

9 본 논문에 나오는 법전의 조항 번호는 로트(M. Roth)의 분류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Martha T.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2nd ed.; Atlanta: Scholars Press, 1997).

10 LU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우르남무 법전(Laws of Ur-Nammu)의 약자이다. 신체 상해 관련 규정은 제18-20, 22조에 나타난다.

11 A. S. Diamond, “An Eye for an Eye”, *Iraq* 19 (1957), 151-153.

(2) 리피트이슈타르 법전(LL, 기원전 20세기)<sup>12</sup>

LL에는 고대 근동 법전 사상 처음으로 임신부 상해 관련 규정이 등장한다. LU가 일반적인 신체 상해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LL은 임신부 보호에 집중하며 피해자의 신분에 따른 배상액 차등을 명문화했다. 예컨대 자유민 여인을 타격하여 유산시킨 경우 30세겔, 여자 노예의 경우 5세겔의 배상금을 부과한다. 특히 임신한 여인을 사망케 했을 때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점은, 단순 신체 상해의 결과로 발생한 생명 침해에 대해서도 신체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동태복수법의 직접적인 형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다.

2) 에슈눈나 법전(LE, 기원전 18세기)<sup>13</sup>

LE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앞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아카드어 법전이다. LE는 기존 수메르 법전들의 금전 배상 원칙을 견지하며 그 체계를 한층 세분화하였다. 특히 임신부 상해에 집중했던 LL과 달리, 신체 부위의 중요도에 따른 단계적 차등 배상을 도입하여 피해 부위별 배상액을 LU보다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신분보다 부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던 LU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배상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구조화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된 배상 체계 내에서도 동태복수법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금전 배상이 지배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12 LL은 리피트이슈타르 법전(Laws of Lipit-Ishtar)의 약자이다. 상해 및 배상 규정은 §d, §e, §f 조항에서 다루어진다. 다른 법전과 달리 LL은 통일된 번호 체계가 없어 로트가 부여한 알파벳 번호를 따랐으며, 각 조항의 점토판상 위치는 로트의 편집본(Roth, 윗글, 26-27)을 참조하라.

13 LE는 에슈눈나 법전(Laws of Eshnunna)의 약자이다. 상해 및 배상 관련 규정은 제42-47조에 명시되어 있다.

### 3) 함무라비 법전(LH, 기원전 18세기)<sup>14</sup>

LH는 고대 근동 법전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며, 배상 방식에 있어 금전 배상과 동태복수법이 처음으로 병존하는 법전이다.<sup>15</sup> LH는 사회 구성원을 자유민(*awilu*), 평민(*muškēnu*), 노예(*wardu/amtu*)의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신분과 피해 유형을 정교하게 교차시켜 배상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과실과 고의를 엄격히 구분하여 치료비 전액 배상 규정까지 도입하고 있다.

LH의 법 집행 원리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동태복수법이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유민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대표되는 동태복수법 원칙(제196, 197, 200조)은 보편적 평등의 표현이라기보다, 동일 계층 내에서의 엄격한 상응 원칙으로 기능한다. 반면 하급자가 상급자의 뺨을 때리면 공개 채찍질 60대(제202조), 노예가 자유민의 뺨을 때리면 귀를 절단하는 등(제205조), 신분이 낮아질수록 가혹한 신체형이 부과된다. 나아가 제210조는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 임신부를 구타하여 사망케 했을 경우, 가해자가 아닌 그의 딸을 사형에 처하는 대리적 동태복수법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다른 법

---

14 LH는 함무라비 법전(Laws of Hammurabi)의 약자이다. 통상 CH(Code of Hammurabi)로도 표기하나, 본고에서는 로트의 편집본에서 사용한 약자를 따라 LH로 통일한다. 상해 규정은 동태복수법에 의한 처벌(제196-197, 200, 210조)과 배상 규정(제198-199, 201-209, 211-214조)으로 구분된다.

15 LH는 동태복수법과 신분적 차등 처벌이라는 전근대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현대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보편적 법 원칙들을 선구적으로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제1-2조), 증거주의 원칙(제7조),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제206-207조), 법관의 판결 번복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제5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John D. Prince, "Review: The Code of Hammurabi",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8 (1904), 607; C. H. W. Johns, "Babylonian Law & Code of Khammurabi", Hugh Chisholm (ed.), *Encyclopædia Britannica* (11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1), 116-121.

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LH만의 독특한 규정이다. 결국 피해자의 신분  
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이러한 체계는, 침해된 신체의 가치가 피  
해자의 사회경제적 위계에 의해 결정됨을 여실히 보여준다.

#### 4) 히타이트 법전(HL, 기원전 15~12세기)<sup>16</sup>

HL은 LH보다 후대의 법전임에도 동태복수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  
으며, 일관되게 금전 배상 원칙을 유지한다. HL은 오히려 부상의 결과  
(영구 장애 여부)와 발생 상황(다툼 혹은 우발적 사고)을 엄격히 구분하는 세  
밀한 기준을 도입하고, 치료비 부담 및 대리 노동 인력 제공과 같은 실  
질적 피해 회복 원칙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특히 임신 개월 수에  
따라 배상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한 점은 다른 고대 근동 법전과 차별화  
되는 HL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HL의 사례는 동태복수법이 법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특정 문화 및 지역적 전통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  
용된 원리였음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 5) 중기 아시리아 법전(MAL, 기원전 12~11세기)<sup>17</sup>

MAL은 고대 근동 법전 중 배상 규정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후기의 법전으로, LH와 마찬가지로 금전 배상과 동태복수법을 병용하  
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띤다.

첫째, HL과 MAL은 동시대에 병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발전  
양상을 보였다. HL이 동태복수법을 배제하고 정교한 금전 배상 체계를  
구축한 반면, MAL은 금전 배상을 유지하면서도 동태복수법과 신체 형

---

16 HL은 히타이트 법전(Hittite Laws)의 약자이다. 상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제7-18조에 나타난다.

17 MAL은 중기 아시리아 법전(Middle Assyrian Laws)의 약자이다. 상해 및 배상 규정은 제 21, 50-52조에서 다루어진다.

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방향을 택했다.

둘째, LL과 유사하게 금전 배상 조항이 임신부 유산이라는 특정 사안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기준은 훨씬 세분화되었다. 피해자의 신분은 물론 태아의 성별, 남편의 자녀(아들) 유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까지 처벌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MAL에서 ‘아들의 유무’가 처벌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중요한 사상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제50조에서 남편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부가 타인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했을 때, 유산된 태아가 남아인 경우의 처벌이 여아인 경우보다 무겁게 규정된다. 이는 여성의 생명권보다 가계 계승권의 침해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범죄의 본질을 여성 개인에 대한 가해보다 남편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개념화한 것이다.

넷째,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원칙을 이원화하여 적용했다. MAL은 자유민 여성의 유산에 대해서는 막대한 양의 납(lead)을 지불하는 금전 배상과 태형 등을 규정했으나(제21조), 유독 ‘창녀’의 유산에 대해서는 “매에는 매로” 대응하며 태아의 생명에 상응하는 동태복수법적 원리를 적용하되, 구체적인 배상의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제52조). 이는 고대 근동 법전 중 임신부 관련 규정에 동태복수법을 적용한 매우 희귀한 사례다. 특히 제22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금전 배상의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 여성이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은, MAL의 차등적 처벌 구조가 개인의 존엄성보다 해당 신분이 상징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른 징벌적 상응성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6) 요약

상해 관련 규정에 대한 고대 근동 여섯 법전의 통시적 검토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www.kci.go.kr

첫째, 고대 근동 법전들을 관통하는 금전 배상의 원칙은 사적 보복의 굴레를 벗어나, 실질적 손해 회복을 지향하는 사법적 실용주의가 당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였음을 시사한다.<sup>18</sup>

둘째, 동태복수법은 고대 근동 법제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는 각 공동체의 정치적·문화적 지향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 가변적 원리였으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신분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는 상응 원칙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범죄의 경중은 배상액이라는 정량적 수치를 통해 표현되는 데, 이 수치는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이라는 범죄 행위 외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고대 근동 법전들의 배상 체계는 오경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비교 준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근동 전통의 지평 위에서 오경의 동태복수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앞선 고찰을 바탕으로, 이제 오경의 동태복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의 동태복수법

동태복수법은 오경의 세 법전(계약법전, 신명기 법전, 성결법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각 법전의 법적·사회적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용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실제적 신체 상해를 다루는 출애굽기 21장(계약법전)과 사법적 위증의 맥락을 다루는 신명기 19장(신명기

---

18 P. Heger, "Source of Law in the Biblical and Mesopotamian Law Collections", *Biblica* 86 (2005), 329.

법전)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법적 전통과의 연속성 및 독자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애굽기 21장 18-27절

출애굽기 21장의 배상 관련 규정은 일반 상해에 대한 금전 배상과 임신부 상해에 적용되는 동태복수법이 병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 자체는 LH<sup>19</sup> 및 MAL과 유사하며, 임신부 유산 및 사망에 대한 규정이 LL 이후 LH, HL, MAL의 공통적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출애굽기의 임신부 관련 규정도 고대 근동의 법적 전통 안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배상 규정에는 고대 근동 법전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배상액 결정의 유연성이다. 출애굽기는 일반 상해에 대해 ‘완치’와 ‘손해 배상’이라는 실질적 회복을 명령하며(19절), 특히 임신부 유산 시에는 배상액을 수치로 고정하지 않고 ‘남편의 청구’와 ‘재판장의 판결’에 위임한다(22절). 이는 고대 근동 법전들의 획일적인 정량적 체계를 넘어 피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동태복수법의 적용 범위이다. 고대 근동 법전들 중 임신부 관련 규정에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앞서 다룬 MAL 제52조가 거의 유일하며, 대부분 금전 배상이나 가해자 가족에 대한 대리 처벌로 처리한다. 출애굽기는 유산에 더해 임신부 본인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데(23-25절), 이는 피해자의 신분이 ‘창녀’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는 MAL 제52

---

19 출 21:18-27과 LH와의 내용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D. P. Wright, *윇글*, 7-9, 36-40.

조와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출애굽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이 아닌, 상해의 발생 여부와 그 심각성을 동태복수법 적용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의 지양과 종의 인격적 권리 인정이다. 고대 근동 법전들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배상액을 세밀하게 차등화하며, 특히 노예에 대한 가해는 노예 본인의 신체적 권리 침해가 아닌 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로 개념화한다. 반면 출애굽기는 임산부 관련 규정에 있어 신분적 예외 없이 단일한 상응 원칙을 적용하며, 나아가 종에 대한 주인의 폭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둔다. 주인이 종을 때려 즉사시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고(20절), 종의 눈이나 치아를 손상시킨 경우 ‘종의 해방’(26-27절)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종의 신체적 온전함을 단순한 재산 가치가 아닌 인격적 보호의 대상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출애굽기 21장은 고대 근동의 법적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그 운용 원리에 있어서는 사법적 유연성과 인격적 존엄이라는 독자적인 가치를 투영하고 있다. 고정된 배상액 대신 재판장의 재량을 강조하고, 신분적 위계보다 상해의 실체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변용은, 출애굽기의 법규가 단순한 보복의 원칙을 넘어 개인의 존엄 보호를 지향하는 법적·윤리적 원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신명기 19장 15-21절

신명기 19장에서도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21절)라는 동태복수법의 표현이 등장하나, 그 맥락은 출애굽기와 전혀 다르다. 신명기의 동태복수법은 신체 상해가 아닌 위증이라는 사법적·절차적 맥락에 적용되어 있으며, 복수 증인 원칙(15절)과 재판관의 철저한 조사(16-18절)를 거쳐 위증이 입증된 경우에만 발동된다.

www.kci.go.kr

신명기가 채택하는 ‘의도된 형벌의 전가’, 즉 거짓 고발자를 그가 의도했던 형벌로 처벌하는 응보적 방식(19절)은 고대 근동의 법적 전통에서도 확인된다. LH는 이를 제1조에 배치하여 사법 체계의 근간으로 삼았으며,<sup>20</sup> LL 제17조 역시 의도된 형벌의 전가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신명기 19장은 고대 근동의 법적 자산과 맥을 같이하며 그 전통적 토대 위에 위치한다. 그러나 신명기는 사법 절차보다 처벌의 결과를 중심으로 규정하거나 인간의 증명 한계를 초자연적 판결에 의존하던 고대 근동 법전들과 달리,<sup>22</sup> 재판관의 단계적이고 철저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진실 규명의 책임을 인간 공동체의 사법 절차 안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사법적 합리성의 지향을 드러낸다.

### 3) 요약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두 본문 모두 동태복수법이 다른 법적 원칙들과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

20 LH 제1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죄로 고발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발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Roth, 윗글, 81).

21 LL 제17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안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였으나 고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발한 사안에 해당하는 형벌을 고발자 자신이 받아야 한다 (Roth, 윗글, 29).

22 고대 근동, 특히 메소포타미아 법전들(LU, LH, MAL)은 인간적 수단으로 진실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 신의 관정에 호소하는 ‘강의 신판(River Ordeal)’을 활용하였다. 강의 신판이란 피의자를 강물에 던져 생사 여부로 유무죄를 판정하는 종교적 사법 장치로, 신이 직접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관행은 수메르에서 중기 아시리아 시기에 이르기까지 LU 제13-14조, LH 제2조, MAL 제17·22·24조 등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며, 인간 재판관이 판단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결정을 초자연적 존재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강의 신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하라. Tikva Simone Frymer-Kensky, *The Judicial Ordeal in the Ancient Near East* (BiOr 3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7);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38 (2010), 168.

으며,<sup>23</sup>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동되는 제한적 기제로 기능한다.<sup>24</sup>

그러나 두 본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적용 맥락에서 출애굽기가 실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응보라면, 신명기는 의도된 사법적 위해에 대한 형벌의 역적용 논리에 기반한다. 구조적 무게 중심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출애굽기는 피해 유형별 배상 방식의 분류에 방점을 두는 반면, 신명기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에 집중한다. 동태복수법의 기능 면에서도 두 본문은 같린다. 출애굽기에서는 실질적 배상의 원칙으로 작용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공동체 내의 악을 제거하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적 정의의 선언으로 기능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각각 신체 상해와 사법 절차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선명한 변용 방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레위기 24장은 보다 복합적인 층위를 드러낸다. 레위기 24장은 신성모독과 신체 상해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 안에 통합하고, 교차대구라는 문학적 구조를 통해 법적 위계를 표현하며, 거류민과 본토인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보편적 적용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출애굽기·신명기와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레위기 24장 동태복수법의 고유한 면모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3 출애굽기 21장에서 동태복수법(23-25절)은 금전 배상(18-19절), 면책 조항(21절), 재판장 위임(22절), 중 해방(26-27절) 등의 규정들과 상호 보완적인 단락을 구성한다. 또한 신명기 19장에서 동태복수법(21절)은 복수 증인 원칙(15절), 사법적 조사 절차(16-18절), 위증자 처벌 규정(19-20절)과 함께 절차적 완결성을 지닌 하나의 법적 단위를 형성한다.

24 출애굽기 21장에서 동태복수법은 임신부의 유산을 넘어 임신부 본인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동된다(23절). 신명기 19장에서 동태복수법은 위증의 의혹만으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발동된다(18절).

#### 4. 성결법전의 동태복수법: 레위기 24장 10-23절

레위기 24장 10-23절은 성결법전 내에서 동태복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유일한 본문으로, 본고는 이 단락을 ‘형식적 독자성’과 ‘내용적 독자성’이라는 두 층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형식적 독자성이 서사와 법 규정의 통합, 교차대구법적 구성이라는 외형적 특징을 의미한다면, 내용적 독자성은 이러한 구조 내에 담긴 범죄의 위계적 구분과 이방인에 대한 법적 동등 적용이라는 실질적 원칙을 가리킨다. 즉, 형식적 분석이 레위기 24장의 구성 원리를 드러내는 토대가 된다면, 내용적 분석은 그 위에서 법 정신의 핵심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하에서는 이 두 층위를 차례로 살핀다.

##### 1) 형식적 독자성

###### (1) 서사와 법 규정의 통합

고대 근동 법전들은 “만약 …라면 ~해야 한다(if … then ~)”라는 형식의 결의론적 법(casuistic law) 체계를 취한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조건절(protasis, if …) 속에 가상적 사례로 정형화하여 보편적인 판결 지침을 귀결절(apodosis, then ~)에 도출하는 논리적 형식으로, LU에서 MAL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법적 전통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sup>25</sup>

반면, 레위기 24장은 이러한 가상적 조건절 대신 구체적인 ‘사례 서사(case narrative)’를 법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법 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문학적 장치를 넘어, 이미 선포된 성문법만으

---

25 Albrecht Alt,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trans. R. A. Wilson; New York: Doubleday, 1967), 101-172.

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법적 공백을 ‘판례적 신탁’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동태적 과정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저지른 신성모독 사건은 규정의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판결 근거가 모호한 위기 상황에서 법의 외연을 확장하고<sup>26</sup> 집행의 정당성을 야훼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필수적인 사법적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단순한 서사적 배경 설정을 넘어, 법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슬로밋(שְׁלוֹמִית/셀로미트)은 평화와 안녕을 뜻하는 샬롬에서, 디브리(דִּבְרִי)는 “나의 말”에서, 단은 “징벌하다(דָּן/딘)”에서 각각 파생되었다.<sup>27</sup> 본문은 이 인물의 범죄가 샬롬을 파괴하는 언어적(디브리) 범죄이며, 이로 인해 판결(단)을 받게 됨을 이름의 상징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더욱 주목할 점은 본문이 인물의 혈통과 소속을 상세히 명시하면서도 정작 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이집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혈통에 더하여 이름마저 밝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은 본토인이나 거류민 중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법적 정체성의 모호함 속에 놓인다. 이러한 모호함은 두 집단 모두를 대변하는 문학적 효과를 낳으며,<sup>28</sup> 동시에 거류민과 본토인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조항(16절, 22절)에 대한 서사적 정

26 이는 레 24:10-23의 사건을 통해 법의 인적 적용 범위(누구에게 적용되는가)와 사법적 지배 영역(어디까지 적용되는가)이라는 법의 경계선이 획기적으로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법이 이스라엘 본토인을 넘어 거류민에게까지 확장되고, 형사적 영역을 넘어 종교적 영역인 신성모독까지 포괄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27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대한 다른 해석(슬로밋 = ‘응보’, 디브리 =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y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07-208.

28 Chelcent Fuad, “The Curious Case of the Blasphemer: Ambiguity as Literary Device in Leviticus 24:10-23”,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41 (2019), 61-67.

당화로 가능하다.

이처럼 레위기 24장의 사례 서사는 일반적인 법 규범을 구체적인 맥락 위에 세우고, 이어지는 법 규정의 핵심 논점을 미리 예시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레위기 24장에서 서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법 규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 요소이며, 이러한 서사적 법 형식은 여타 고대 근동 법전과 구별되는 오경 법전만의 독자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 (2) 교차대구법적 구조

사례 서사(10-12절)를 배경으로 이어지는 13-23절은 교차대구법이라는 정교한 문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윌리스는 웰치가 제시한 교차대구 구조를 15-22절의 좁은 범위에서 서사적 틀을 포함한 13-23절 전체로 확장하여, A부터 I까지 9개 층위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구조를 식별해냈다.<sup>30</sup>

### 레 24: 13-23의 교차대구 구조

A 야훼의 말씀 (13절)

B 저주한 사람(למקל/함메칼렐)을 돌로 치м (14절)

C 이스라엘에게 고함 (15a절)

D 하나님을 저주함(ללקל/예칼렐) / 죄를 담당함 (15b절)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16절)

F 사람을 죽인 자 → 죽음 (17절)

29 김선중, “토라! 율법인가, 이야기인가?”, 『신학논단』 64 (2011), 8, 22.

30 Timothy M. Willis, “Blasphemy, Talion, and Chiasmus: The Marriage of Form and Content in Lev 24,13-23”, *Biblica* 90 (2009), 67-68; John W. Welch, “Chiasmus in Biblical Law: An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Legal Texts in the Hebrew Bible”, B. S. Jackson (ed.), *Jewish Law Association Studies IV: The Boston Conference Volum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8.

- G 짐승을 죽인 자 → 배상 (18절)
- H 이웃에게 입힌 상해 (19절)
- I 상처/눈/이 [동태복수법] (20a절)
- H' 이웃에게 입힌 상해 (20b절)
- G' 짐승을 죽인 자 → 배상 (21a절)
- F' 사람을 죽인 자 → 죽음 (21b절)
-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22a절)
- D' 야훼임이니라 (22b절)
- C' 이스라엘에게 고향 (23a절)
- B' 저주한 사람(לְמַקְלָלִים/함메칼렐)을 돌로 치م (23b절)
- A' 이스라엘의 순종 (23c절)

이 구조의 정중앙(I)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20a절)라는 동태복수법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반부(A-H)와 후반부(H'-A')가 구문론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고대 근동 법전들이 피해 유형과 배상액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선형적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레위기 24장은 특정 조항의 배치 자체를 통해 법적 메시지를 담아낸다. 즉, 구조가 곧 의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고대 근동의 법적 사유와 차별화되는 성결법전만의 독자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 배치의 법적 함의는 이어지는 내용적 독자성 분석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2) 내용적 독자성

### (1) 교차대구에 의한 범죄의 위계적 구분

이러한 구조적 토대 위에서 레위기 24장은 범죄의 위계를 시각화하여 전달한다. 윌리스에 따르면, 이 구조는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나아

갈수록 죄의 무게가 가중되는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sup>31</sup> 구조의 중심부(H, H')에는 신체 상해 규정이 위치하며, 중간층(G, G')의 동물 살상과 바깥층(F, F')의 인간 살해를 거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외곽층(D, D')에 신성모독죄를 배치함으로써, 신성모독이 인명 살상보다 더 엄중한 죄임을 구조적 배치 자체로 선언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특징이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범죄 경중의 표현 방식이 고대 근동 법전들과 본질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 법전에서 범죄의 경중은 배상액이라는 경제적 수치로 표현되나, 레위기 24장의 교차대구 구조는 동태복수법을 중심축에 배치할 뿐 아니라, 그 전체를 야훼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순종(A/A')으로 감쌌으로써 법의 근거를 야훼의 권위에 귀속시킨다. 이는 법의 토대를 경제적 가치가 아닌 야훼 중심의 존재론적 질서 위에 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대구의 중심축(I)에 자리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20a절)는 단순한 보복 원칙이 아니라 이 구조 전체의 법적 논리를 떠받치는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고대 근동 법전들은 신체 부위별 피해에 대해 고정된 금전 배상액을 부과하였고(LU, LE), 그 배상액의 크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LH, MAL). 이에 반해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은 배상액을 수치로 명시하지 않고 ‘행위 자체의 상응성’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는 신체 손상의 가치를 피해자의 신분이 아닌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 법전들의 신분 종속적 배상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이 원칙이 구조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신성모독에서 인명 살상, 동물 살상, 신체 상해에 이르는 모든 범죄의 처리가 이 상응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이 드

---

31 Willis, 윗글, 74.

32 Willis, 윗글, 74.

러난다.

범죄의 이러한 위계적 구분은 신성모독 죄의 영역에서 한 층위 더 세분화된다. 레위기 24장에는 신성모독과 관련하여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한다. 하나는 14절, 15b절, 23b절의 “저주하다(לְקַלֵּל/킬렐)”이며, 다른 하나는 16a절, 16c절의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다(עָוָה נִקְבוֹ/나카브 션)”이다.<sup>33</sup> 본문에서 신성모독 관련 용어가 두 가지의 상이한 형태로 사용된 원인은 아래의 교차대구의 중첩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레 24:13-23의 이중 교차대구 구조

A 야훼의 말씀 (13절)

B 저주한 사람(לְקַלֵּל/함메칼렐)을 돌로 치م (14절)

C 이스라엘에게 고함 (15a절)

D 하나님을 저주함(לְקַלֵּל/예칼렐) / 죄를 담당함 (15b절)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16절)

e<sub>1</sub> 이름을 모독함 (עָוָה נִקְבוֹ/노케브 션) → 반드시 죽음 (16a절)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16b절)

e<sub>1</sub>' 이름을 모독함 (עָוָה נִקְבוֹ/노크보 션) → 반드시 죽음 (16c절)

F 사람을 죽인 자 → 죽음 (17절)

33 킬렐과 나카브 션의 정의와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며, 논의의 핵심은 두 표현이 동의어인지 아니면 별개의 행위를 가리키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견해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라. Jacob Weingreen, “The Case of the Blasphemer (Leviticus XXIV 10 ff.)”, *Vetus Testamentum* 22 (1972), 118-123; J. B. Gabel & C. B. Wheeler, “The Redactor’s Hand in the Blasphemy Pericope of Leviticus XXIV”, *Vetus Testamentum* 30 (1980), 227-229; Dennis H. Livingston, “The Crime of Leviticus XXIV 11”, *Vetus Testamentum* 36 (1986), 352-354; John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408-409; Rodney R. Hutton, “The Case of the Blasphemer Revisited (Lev. XXIV 10-23)”, *Vetus Testamentum* 49 (1999), 532-541; Wilfried Warning,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Leiden: Brill, 1999), 96; B. Lee, “Leviticus 24:15b-16: A Crux Revisited”,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6 (2006), 345-349; S. Tamar Kamionkowski, “Leviticus 24,10-23 in Light of H’s Concept of Holiness”, Sarah Shectman & Joel S. Baden (eds.), *The Strata of the Priestly Writings: Contemporary Debate and Future Directions* (AThANT 9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9), 73-86.

- G 짐승을 죽인 자 → 배상 (18절)  
 H 이웃에게 입힌 상해 (19절)  
 I 상처/눈/이 [동태복수법] (20a절)  
 H' 이웃에게 입힌 상해 (20b절)  
 G' 짐승을 죽인 자 → 배상 (21a절)  
 F' 사람을 죽인 자 → 죽음 (21b절)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22a절)  
 D' 야훼임이니라 (22b절)  
 C' 이스라엘에게 고함 (23a절)  
 B' 저주한 사람(בְּקִלְלֵי/함메칼렐)을 돌로 치м (23b절)  
 A' 이스라엘의 순종 (23c절)

월리스의 구조 분석은 레위기 24장의 문학적 정교함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16절을 단일 요소(E)로 취급함으로써 본문에 등장하는 두 신성모독 관련 용어, 즉 '킬렐'과 '나카브 셸'의 기능적 차이를 구조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논문은 월리스의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되, 16절 내부에 별도의 교차대구 구조가 존재함을 새롭게 논증함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13-23절이 거시적 교차대구를 이룬다면, 16절은 그 내부에서 또 하나의 교차대구를 형성한다.<sup>34</sup> 구체적으로 16절(E)은  $e_1$ ((야훼의) 이름 모독 → 반드시 죽음) -  $e$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  $e_1'$ ((야훼의) 이름 모독 → 반드시 죽음)이라는 내부 대칭 구조를 취한다.

이 이중 교차대구 구조는 '킬렐'과 '나카브'라는 두 용어의 기능적

34 밀그롬 역시 16절 내부에서 교차대구 구조(a-x-a')를 식별한 바 있다. 다만 밀그롬은 공동체적 처형 절차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분석이 지향하는 죄의 위계 및 신분적 평등 중심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2128-2133.

차이를 명확히 해명한다. 거시 구조의 외곽에 위치한 ‘킬렐’이 일반적인 신성모독을 포괄한다면, 내부 미시 구조에 삽입된 ‘나카브’는 야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특정하며 그 엄중함이 재차 강조된다. 거시 구조가 범죄 종류에 따른 경중을 보여준다면, 내부 구조는 신성모독의 범위를 좁혀가며 그 핵심인 ‘야훼의 이름’에 도달하는 것이다. 더욱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함 → 반드시 죽음 →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이라는 선언이  $e_1$ -e와  $e_1'$ -E'를 통해 두 번 반복됨으로써,<sup>35</sup> 이 엄중한 법적 책임이 이방인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됨을 구조 자체가 선언하고 있다. 이 이중 구조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를 넘어 중요한 법적 함의를 지닌다. 본문은 ‘킬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죄를 담당할 것”(15b절)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나카브 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16절)라는 훨씬 강경한 형벌을 명시한다. 즉, 이중 교차대 구 구조는 두 용어의 위계를 단순히 의미론적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계를 형벌의 강도 차이로 직접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야훼의 이름’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 신성모독보다 중하다는 원칙은 이처럼 구조와 형벌이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표현되며, 이는 레위기 24장의 법적 정밀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대 근동 법전에서 동태복수법은 신체 상해와 생명의 영역에 국한되며, 신성모독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 규정은 드물다. 일례로 MAL A 제2조는 신성모독 행위자의 책임을 언급하나<sup>36</sup> 구체적인 형벌을 명시하지 않는다. 계약법전의 신성모독 금지 규정(출 22:27) 역시 신체 상해

35  $e_1$ (16a절)과 e(16b절)에서 첫 번째 선언이,  $e_1'$ (16c절)과 E'(22a절)에서 두 번째 선언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과 그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구조적으로 이중 강조되고 있다.

36 MAL A 제2조: 어떤 여성이 — 남자의 아내이든 딸이든 — 수치스러운 말이나 신성모독을 발언하면, 그 여성 혼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남편, 아들, 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Roth, 윗글, 155).

를 다루는 미쉬파팀 본문 밖에 위치하여<sup>37</sup> 상해 규정과 분리되어 있으며 처벌 규정 또한 부재한다. 반면 레위기 24장은 신성모독과 신체 상해를 하나의 유기적인 교차대구 구조 안에 통합한다. 이를 통해 동태복수법이라는 사법 원칙을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상해와 같은 형사법 규정 내에 신성모독을 통합한 것은 레위기 24장만이 갖는 독보적인 특징으로, 이는 성결법전의 법적 혁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38</sup> 브룸은 레위기 24장이 계약법전의 미쉬파팀을 재구조한 법적 혁신임을 논증한 바 있으나, 그 재구조를 추동한 신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는 분석하지 않았다.<sup>39</sup> 레위기 24장의 이중 교차대구 구조는 바로 이 공백을 채운다. 레위기 24장의 재구조는 단순한 법적 형식의 변용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척도를 경제적 배상 가치에서 야훼와의 관계라는 존재론적 질서로 전환시키는 신학적 재정립이었음을 교차대구 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 (2) 이방인의 법적 동등 적용

레위기 24장의 교차대구 구조에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이라는 표현은 E(16절)와 E'(22a절)에 반복 배치되어 있다. 특히 E/E'는 구조상 신성모독(B/B'-D/D')과 신체 상해법(F/F'-I)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37 미쉬파팀은 계약법전(출 20:22-23:33) 내의 사법적 본문을 가리키며, 그 명칭은 도입 부인 출 21:1의 “법규(חֻקֵּי/미쉬파팀)”에서 유래한다. 계약법전의 전체 범위(일반적으로 20:22-23:33)와 미쉬파팀의 종결 지점(22:16 혹은 23:19)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갈리나, 본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법이 집중된 출 21:1-22:16을 미쉬파팀의 범위로 간주한다. 이 본문은 주로 살인, 상해, 재산 피해의 세 가지 범주를 다루며, 특히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 규정과 동태복수법의 원칙이 이 문맥에 포함되어 있다.

38 D. R. Johnson, *Sovereign Authority and the Elaboration of Law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FAT 2 122; Tübingen: Mohr Siebeck, 2020), 10.

39 Jonathan Vroom, “Recasting Mišpātim: Legal Innovation in Leviticus 24:10-2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36-37.

써, 단순한 수사적 강조를 넘어 이 두 이질적인 영역을 ‘법적 보편성’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매끄럽게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법제사적 관점에서 이는 획기적인 선언이다. 고대 근동 법전들이 신분과 계층에 따른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성결법전은 차별받던 거류민을 본토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과 형벌을 감내하는 대등한 사법적 주체로 재정의하기 때문이다.<sup>40</sup> 오경 내에서도 출애굽기나 신명기가 거류민을 주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sup>41</sup> 레위기 24장은 법적 보편성의 측면에서 가장 진일보한 형태를 띠고 있다.<sup>42</sup> 이 차이는 거류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류민을 규정하는 신학적 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거류민 보호 규정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윤리적 명령인 반면(출 22:20; 23:9; 신 14:29), 성결법전의 거류민 개념은 야훼의 땅이라는 공간적·신학적 전제 위에 정립된다. 바인펠트(M. Weinfeld)에 의하면, 성결법전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야훼의 소유이며 그 위에 거주하는 자들은 야훼의 거류민으로 규정된다(레 25:23).<sup>43</sup> 이 신학적 전제 위에서 보면, 레위기 24장의 거류민 동등 적용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평등이 아니라 신

40 케슬러(R. Kessler)에 의하면, 왕정 시대의 거류민은 주로 경제적 약자층을 형성했으나, 포로기 및 페르시아·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전쟁과 강제 이주로 그 수가 급증하며 인구 구성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의 거류민들은 더 이상 소수나 약자에 머물지 않았으며, 때로는 이스라엘 본토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도 했다. 즉, 레위기의 동태복수법은 포로기 이후 거류민의 인구가 급증하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본토인에 비견될 만큼 확대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2014), 18.

41 출 22:20; 23:9; 신 14:29.

42 이용화, “성결법전에 드러난 약자의 인권”, 『이성과 신앙』 44(2010), 14-15, 21-22.

43 Moshe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5), 234-235.

학적 필연성을 지닌다. 야훼의 땅에 거주하는 자는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할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신성모독은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한 침해이므로 양자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거류민 포함 조항은 앞서 살핀 사례 서사와 긴밀히 상응한다. 신성모독자가 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이집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설정과 그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그가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를 대변하게 한 문학적 장치는, 법적 동등 적용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레위기 24장은 서사, 구조, 법제적 규범이라는 세 층위의 결합을 통해, 야훼의 정의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상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5. 나오는 말

법은 진공 속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추적한 약 천 년에 걸친 고대 근동 법전 전통의 흐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태복수법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어떤 법전에서는 채택되고 어떤 법전에서는 거부되었으며, 채택된 경우에도 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세계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히타이트 법전이 동태복수법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금전 배상 체계를 정교화하는 방향을 택한 반면, 함무라비 법전과 중기 아시리아 법전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철저히 신분 질서의 논리 안에서 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태복수법이 법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각 문화가 정의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www.kci.go.kr

오경은 이 다양한 법적 수용과 변용의 역사 위에서 동태복수법을 수용하되, 그것을 담는 법적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계약법전은 신분에 따른 차등을 부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인격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신명기 법전은 동태복수법의 작동 조건으로 엄격한 사법적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응보의 자의성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두 방향이 각각 법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절차를 변용한 것이라면, 레위기 24장은 법의 근거 자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레위기 24장의 가장 근본적인 기여는 동태복수법을 야훼 신앙의 언어로 재구조한 데 있다. 고대 근동 법전들에서 범죄의 경중은 배상액이라는 수치로 환산되었다. 이 체계에서 정의는 신분 질서의 논리, 즉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레위기 24장은 이 배상 중심의 질서를 교차대구라는 구조적 위계로 대체함으로써, 정의의 척도를 경제적 가치에서 야훼와의 관계라는 존재론적 질서로 전환시킨다. 무엇이 더 중한 범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신분이나 재산 가치가 아니라, 야훼와의 관계에서 그 행위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교차대구 구조에서 신성모독을 외곽에 배치한 것은 이를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며, 이는 야훼 중심의 새로운 정의 개념의 가장 선명한 표현이다. 야훼 중심성이 동태복수법의 구조적 배치를 통해 고대 근동의 정량적 사법 체계와 명시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 즉 법적 위계의 재판이라는 사법적 언어로 구현된다는 점은 기존의 성결법전 연구에서 충분히 논증되지 않았으며, 본 논문은 법제사적·문학적 분석의 결합을 통해 바로 이 공백을 메움으로써 성결법전의 야훼 중심성 논의를 사법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 전환의 논리적 귀결은 거류민 포함 조항에서 완결된다. 야훼의 정의가 경제적·신분적 가치가 아니라 존재론적 질서에 근거한다면, 그

정의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레위기 24장이 거류민과 본토인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선언한 것은 바로 이 논리의 실현이다. 고대 근동 법전의 전통 전체를 통틀어 이러한 보편적 적용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레위기 24장이 단순히 기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초월하였음을 보여준다.

서사와 법 규정의 통합이라는 형식적 독자성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대 근동 법전들의 조건절 형식은 법을 가상의 사례에 근거한 일반적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레위기 24장은 법 규정 앞에 사례 서사를 배치함으로써, 일반적 원칙으로만 선언될 수 있었던 법이 구체적 상황과 인물을 통해 그 적용 근거를 부여받는 형식을 취한다. 더욱이 이 서사는 야훼가 모세에게 직접 판결을 내리는 신탁의 형식을 띠고 있어, 법의 권위가 왕의 선포가 아니라 야훼의 신탁에 있음을 선언한다. 이는 레위기 24장이 고대 근동의 법 전통과 외형적 형식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상적 토대 위에서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상의 분석은 레위기 24장의 동태복수법 연구에 있어 법제사적 접근과 문학적 비평의 결합이 불가결함을 확인시켜 준다. 법제사적 분석은 레위기 24장이 기존 전통과 맺고 있는 독자성을 드러내지만, 그 독자성이 왜 ‘교차대구’와 ‘서사’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했는지는 문학적 층위의 해독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두 방법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만, 레위기 24장이 고대 근동의 법적 언어를 빌려와 전혀 새로운 신학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는 사실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중, “토라! 율법인가, 이야기인가?”, 「신학논단」 64 (2011), 7-28.
- 김아리, “고대 근동 법률 전통의 내부적 영향과 외부적 영향”, 「역사학보」 264 (2024), 223-246.
- 라이어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 (2014), 12-30.
- 이용화, “성결법전에 드러난 약자의 인권”, 「이성과 신앙」 44 (2010), 5-48.
-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종교성”, 「구약논단」 38 (2010), 157-186.
- 임상국, “구약성서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신학과 세계」 74 (2012), 7-31.
- 채홍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탈출 21, 22-27): ‘동태복수법’인가?”, 「신학과 철학」 14 (2009), 113-138.
- Cohen, Yoram, “Cuneiform Writing in Bronze Age Canaan”, A. Yasur-Landau, E. H. Cline and Y. M. Rowan (eds.), *The Social Archaeology of the Levant: From Prehistory to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45-264.
- Coote, Robert B., *In Defense of Revolution: The Elohists'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Diamond, A. S., “An Eye for an Eye”, *Iraq* 19 (1957), 151-155.
- Douglas, Mary,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Frymer-Kensky, Tikva Simone, *The Judicial Ordeal in the Ancient Near East* (BiOr 3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7).
- Fuad, Chelcent, “The Curious Case of the Blasphemer: Ambiguity as Literary Device in Leviticus 24:10-23”,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41 (2019), 51-70.
- Gabel, J. B., & C. B. Wheeler, “The Redactor’s Hand in the Blasphemy Pericope of Leviticus XXIV”, *Vetus Testamentum* 30 (1980), 227-229.
- Hartley, John E.,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 Heger, P., “Source of Law in the Biblical and Mesopotamian Law Collections”, *Biblica* 86 (2005), 324-342.
- Hutton, Rodney R., “The Case of the Blasphemer Revisited (Lev. XXIV 10-23)”, *Vetus Testamentum* 49 (1999), 532-541.
- Johns, Claude Hermann Walter, “Babylonian Law & Code of Hammurabi”, Hugh Chisholm (ed.), *Encyclopædia Britannica* (11th ed.;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11), 116-121.
- Johnson, D. R., *Sovereign Authority and the Elaboration of Law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FAT 2 122; Tübingen: Mohr Siebeck, 2020).
- Kamionkowski, S. Tamar, "Leviticus 24,10-23 in Light of H's Concept of Holiness", Sarah Shectman & Joel S. Baden (eds.), *The Strata of the Priestly Writings: Contemporary Debate and Future Directions* (ATHANT 95;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9), 73-86.
- Lee, B., "Leviticus 24:15b-16: A Crux Revisited",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6 (2006), 345-349.
- Livingston, Dennis H., "The Crime of Leviticus XXIV 11", *Vetus Testamentum* 36 (1986), 352-354.
- Milgrom, Jacob, *Leviticus 23-2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B; New York: Doubleday, 2001).
- Prince, John D., "Review: The Code of Hammurabi",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8 (1904), 601-609.
- Roth, Martha T.,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2nd ed.;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Sampey, J. R., "The Code of Hammurabi and the Laws of Moses II", *Review & Expositor* 1 (1904), 233-243.
- Vroom, Jonathan, "Recasting *Mišpāṭim*: Legal Innovation in Leviticus 24:10-23",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27-44.
- Warning, Wilfried,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Leiden: Brill, 1999).
- Weinfeld, Moshe,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95).
- Weingreen, Jacob, "The Case of the Blasphemer (Leviticus XXIV 10 ff.)", *Vetus Testamentum* 22 (1972), 118-123.
- Welch, John W., "Chiasmus in Biblical Law: An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Legal Texts in the Hebrew Bible", B. S. Jackson (ed.), *Jewish Law Association Studies IV: The Boston Conference Volume* (Atlanta: Scholars Press, 1990), 5-22.
- Wells, B. & F. R. Magdalene (eds.),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vol. 1, *The Shared Tradition Cuneiform and Biblical Sources* (Winona Lake: Eisenbrauns, 2009).
- Willis, Timothy M., "Blasphemy, Talion, and Chiasmus: The Marriage of Form and Content in Lev 24, 13-23", *Biblica* 90 (2009), 68-74.

Wright, D. P., *Inventing God's Law: How the Covenant Code of the Bible Used and Revised the Laws of Hammurab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Zer-Kavod, M., "The Code of Hammurabi and the Laws of the Torah", *Jewish Bible Quarterly* 26 (1998), 107-110.

검색어

동태복수법, 법제사, 고대 근동 법전, 레위기 24장 10-23절, 교차대구법

[ ABSTRACT ]

## The Lex Talionis in Leviticus 24 from Legal-Historical and Literary Perspectives

Young-Hye Kim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lex talionis* in Leviticus 24 from two complementary perspectives: legal-historical and literary-structural. While the *lex talionis*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legal principle shared betwee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ntateuch, the distinctiv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its formulation in Leviticus 24 have rarely been subjected to systematic legal-historical analysis.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lacuna by situating Leviticus 24 within the broader trajec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egal traditions and demonstrating how its redactor transformed inherited legal forms into a vehicle for a distinctive theological expression.

The paper proceeds in three stages. First, it conducts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lex talionis* across six ancient Near Eastern law collections, establishing that the *lex talionis* was not a universal principle but a selectively adopted one, consistently subordinated to social hierarchy and expressed through quantitative monetary compensation. Second, it compares the three Pentateuchal texts containing the *lex talionis* — Exodus 21, Deuteronomy 19, and Leviticus 24 — identifying the unique transformative trajectory of each. Third, it analyzes the formal and substantive peculiarities of Leviticus 24 in depth.

The analysis reveals that Leviticus 24 exhibits two layers of

www.kci.go.kr

differentiation. Formally, it integrates narrative and legal prescription within a single unit — a feature unattested in ancient Near Eastern law collections — and organizes its legal content through a sophisticated chiasmic structure. Substantively, this chiasm serves as a legal reasoning system that ranks crimes hierarchically according to their theological gravity rather than their economic value, incorporates blasphemy within the domain of the *lex talionis*, and extends equal legal standing to resident aliens. The paper concludes that in Leviticus 24, the redactor appropriated the legal language of the ancient Near East while fundamentally reconstituting its conceptual foundations, establishing Leviticus 24 as the most theologically sophisticated expression of the *lex talionis* in the Pentateuch.

key words

*Lex Talionis*, Legal History, Ancient Near Eastern Law Collections, Leviticus 24 : 10-23, Chiasmus

투고일 : 2026년 04월 17일

심사일 : 2026년 05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5월 19일

www.kci.go.kr